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 강화를 위하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되,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에 두었던 한시정원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에 관한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2명(4급 1명, 연구관 1명)은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을 신설하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고도보존육성팀”을 “고도보존육성팀 및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으로, “팀장”을 “팀장 및 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고도에 소재한 핵심유적(「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은 제외한다) 복원·정비에 관한 사항

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사항
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총괄·조정
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관련 기초 조사·연구
5.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대외협력
6.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교육 및 홍보
7.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미

치는 영향 분석

8.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관련 각종 기술지도 및 현장 점검
9.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발표회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장(제31조)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총계 “343”을 “345”로, 일반직 계 “342”를 “344”로, 행정사무관 “17”을 “18”로 하고, 행정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다음에 “행정주사·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를 신설한다.

별표 4 중 총계 “352”를 “354”로, 일반직 계 “351”을 “353”으로, 행정사무관 “17”을 “18”로 하고, 행정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다음에 “행정주사·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를 신설한다.

별표 16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신라

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은 2028년 8월 9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역사문화권과장이 분장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문화유산국) ① ~ ③ (생략)	제8조(문화유산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유산국에 문화유산정책과 · 근현대유산과 · 수리기술과 · 역사유적정책과 · 역사문화권과 · 유적발굴과 및 건축유산팀 · 민속유산팀 · <u>고도보존육성팀</u> 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각 <u>팀장</u> 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 ----- ----- ----- ----- <u>고도보존육성팀</u> 및 <u>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u> <u>· 정비추진단</u> ----- ----- <u>팀장</u> 및 <u>단장</u> ----- ----- -----.
⑤ ~ ⑫ (생략)	⑤ ~ ⑫ (현행과 같음)
⑬ 고도보존육성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 -----.
1. ~ 1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u><신 설></u>	17. <u>고도에 소재한 핵심유적</u> <u>(「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u> <u>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u> <u>제2호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u> <u>유적은 제외한다) 복원 · 정비</u> <u>에 관한 사항</u>
<u><신 설></u>	⑭ <u>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 · 정</u>

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사항

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총괄·조정

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관련 기초 조사·연구

5.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대외협력

6.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교육 및 홍보

7.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8.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관련 각종 기술지도 및 현장 점검

9.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발표회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을 위하

<u>제13장 한시조직</u> <u>제31조(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 ①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u> <u>②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u>	<u>여 필요한 사항</u> <u><삭 제></u> <u><삭 제></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국가유산청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343</u>	<u>345</u>	+2
일반직 계	.		.	.	
	.		.	.	
			<u>342</u>	<u>344</u>	+2
행정사무관	.		.	.	
	.		.	.	
			<u>17</u>	<u>18</u>	+1
행정주사 · 시설주사 또는 <u>학예연구사</u>	.		.	.	
	.		.	.	
			<u><신 설></u>	<u>1</u>	+1
	.		.	.	
	.		.	.	

[별표 4]

국가유산청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352</u>	• <u>354</u>	+2
일반직 계	• • <u>351</u>	• • <u>353</u>	+2
행정사무관	• • <u>17</u>	• • <u>18</u>	+1
행정주사·시설주사 또는 <u>학예연구사</u>	• • <u><신 설></u>	• • <u>1</u>	+1
•	•	•	
•	•	•	